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26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9.

고용노동부장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아래 사업개요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고용24」에 게시될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특히 비수도권 청년 이탈 방지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 우대지원

○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 * ▲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 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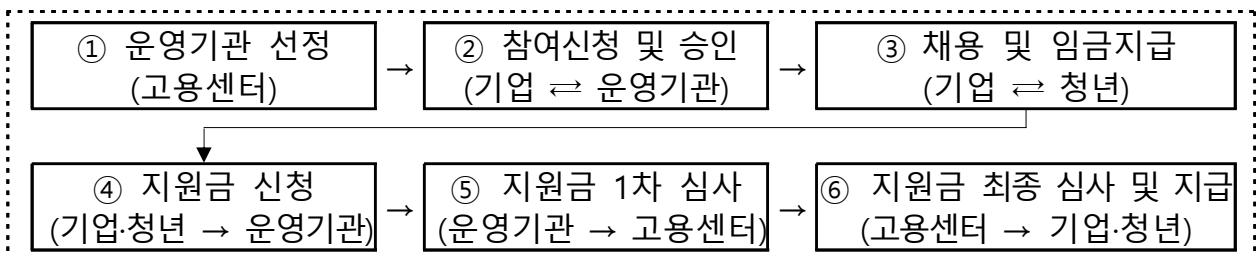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절차)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후 지원금 지급



2 사업위탁 관련 주요내용

- 위탁규모 : 총 10.5만명 (수도권 5만5천명 · 비수도권* 5만명)
 - * (붙임2 참고) 일반 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 운영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별 위탁규모 추후 변경 가능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하여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완료시까지
- 위탁내용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 · 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 · 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 · 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 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위탁 사업지역 : 위탁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 관할지역
 - ※ 고용센터 관할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 "비수도권" 유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며, 비수도권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시에 일반·우대·특별지원의 세부 유형이 결정
 - 단, 수도권 내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도권 유형 이외 비수도권 유형으로 약정체결 시 결정
- 위탁운영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유형별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지급
 - ※ 위탁운영비 지급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되 추후 확정 예정임
 - (지급기준)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함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기업지원금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6개월분) 지원금 지급시 20만원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기업지원금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6개월분) 지원금 지급시 20만원

*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조건)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근속하여 1차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시 10만원

- (지급방식) '26년과 '27년 2년에 걸쳐 위탁사업비의 50%씩 분할 지급하되, 사업 종료 후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③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

* 다만, 주된 사업자는 사업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함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②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신청규모 : 운영기관별 최소 500명* 이상 위탁신청
 - ※ 신청 운영기관의 관할 소재지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 *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사업장 수, 청년인구 수) 및 '25년 사업 참여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500명 미만으로 위탁 가능
- 기타사항
 -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A등급 기관은 우선 선정
 -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B등급 기관은 심사 시 5점 이내 범위에 가점
 -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선정 제한
- 제출서류* : ①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10부 또는 ②신청서** 원본 1부 및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 8개 대표(지)청은 제출서류 형식을 위 ① 또는 ② 중에서 선택하여, 지청에도 같은 형식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안내
 - ** 붙임의 서식1 및 첨부1-1, 첨부 1-2를 활용함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광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 12. 19.(금) 09:00 ~ '26. 1. 5.(월) 18:00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 우편 접수는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함

5 선정절차

- (심사)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접수 고용센터) ~ '26. 1. 19.(월) 18:00까지 결과 안내 예정
 - * 신청서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의 결과 안내는 해당 고용센터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결과안내 방식에 대하여 확인 필요
- (위탁약정 체결) 고용센터-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
 -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와 위탁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
 - (위탁약정 체결) ~'26. 1. 23.(금)까지 위탁체결 완료 必
 - (사업수행<예정>) '26. 1. 26.(월)부터 2026년도 사업수행 예정

6 문의처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붙임 고용센터 문의처 참고

- 붙임 1. (서식1) 운영기관지정 신청서,
일반현황(첨부1-1), 사업계획서(첨부 1-2)
2. (서식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심사기준(참고 2-1)
3. (붙임1)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4. (붙임2) 인구감소지역 분류

[서식 1]

(단 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컨소시엄)

기관 현황 (주사업자)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 A X)	관리책임자 (E - m a i l)	
	직업소개업 신고(등록)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료직업소개사업 <input type="checkbox"/> 유료직업소개사업	
	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영리	
기관 현황 (보조사업 자)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전화번호 (F A X)	관리책임자 (E - m a i l)
	컨소시엄 사업 내용	보조사업비율 (위탁비 기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등)
---------------	---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합계	평균
총 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 ○ ○ 분야					
- ○ ○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	정규직* 여부
	총괄 책임자								
	등록								
	지원금 지급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사업계획서

1. 사업 목표

- ※ '26년도 목표인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 신청 운영기관의 관할 소재지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 *위탁규모 : 총 10.5만명 (수도권 5만5천명 · 비수도권 5만)

2. 사업 내용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홍보, 참여자(기업, 청년) 발굴·모집, 상담·지원, 사업 신청 접수·적격 여부 심사, 지원금 신청·지급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기업 발굴·모집·확보 방안, 적정 상담 등 채용지원,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구분	비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 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 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 계				

※ <총사업예산> (수도권) 목표 채용인원 × 20만원, (비수도권) 목표 채용인원 × 30만원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1.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사업 수행 실적
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4-2.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분	사업 수행 전문성
	■ ■
	■ ■

※ 해당 분야(산업 등)의 구인처 보유·관리 현황 등, 사업운영 전문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 ○ 기 관 심 사 표

기 관 명			
총 직원수/ 전담직원수		신청인원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기업·청년)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정확한 사업 이해로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관리 여부 (30점)	
인적자원 운용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 (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25년 운영기관 평가 결과 (가점 5점)	'25년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은 5점 이내 가점	
총 계		

평가자: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30점)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참여자 모집 실적, 취업률 등)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 정부위탁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관리 경험에 따른 능력 · 전문인력 보유 정도 -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여부, 기타 전담인력자 여부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관찰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및 상담 경력 보유 여부, 대상자 발굴·모집의 전문성 등) · 도약장려금사업 전담인력이 정규직인지 여부 *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취업알선전산망 비롯하여 취업알선 관리프로그램 보유여부,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50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모집 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 홍보 수단(자체 홈페이지,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매체 등) 활용 전략, 타게팅 맞춤형 홍보 전략 및 실현 가능성, 홍보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
	정확한 사업 이해로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관리 여부 (30점)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각 지원요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정확한 사업수행 여부 ·기업·청년 등 참여자 관리 방안, 취업알선·구직지원 등 서비스 제공 여부, 주기별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적기지급 처리, 참여 근로자 실제 재직 여부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인적자원 운용계획 (15점)	인적자원 운용 방안 (15점)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업무분장의 상세화 여부, 업무담당자 1인당 업무량의 적정성,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자 DB 관리 시스템 구축, 담당자 직무능력 제고 방안
유관기관과 의 협력 (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협업,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비 고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A등급 기관 : 우선선정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 : 5점 이내 가점 부여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D등급 기관 : 선정 제한	

붙임 1**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지방청	고용센터	전화번호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02-2004-7394, 7370
	서초고용센터	02-580-4972, 4989, 4940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52, 4708, 4709, 4723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486, 8434, 8575, 854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3496, 6025, 6011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156, 2260, 2402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76, 1844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49, 9393, 9371, 9380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032-460-4641, 4691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731
	인천서부고용센터	032-540-2050
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032-310-8843, 8852
	김포고용센터	031-999-0939, 0941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893, 0975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031-920-3928, 3997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031-231-7835, 7855, 7858, 7938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031-739-4932, 4946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031-463-3801, 3805, 0768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031-412-6645, 6647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031-646-1264~6, 1287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033-610-1990-4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033-769-0967, 0934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033-550-8661
영월지청	영월고용센터	033-371-6254

지방청	고용센터	전화번호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051-860-2072, 2102, 1927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245, 7216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945, 9970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052-228-3913, 3918, 1925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055-330-6435, 6444
	양산고용센터	055-379-2431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055-760-6753~6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055-650-1811~3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053-667-6032 6034, 6037, 6049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464, 6466, 6450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054-280-3050, 3052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054-440-3361, 3365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054-639-1132, 1139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054-851-8062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062-609-8648~50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063-270-9202, 9215, 9217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063-840-6507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063-450-0634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061-280-0541~42, 0552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061-720-9150, 9161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042-480-6013~14, 6016, 6018~6019, 6029
	세종고용센터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043-229-0714, 0715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041-620-7444~6, 7448, 7497, 9598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043-850-4030
	제천고용센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59
서산지청	서산고용센터	041-661-5614, 5664

붙임 2

인구감소지역 분류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한 84개 지역으로 구성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광역시 자치구(5개) 제외>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특별지원 지역(40개)	우대지원 지역(44개)	
서울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군위군	7개 자치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 ▲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